#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442

발의연월일: 2025. 1. 10.

발 의 자: 박용갑・이병진・복기왕

이해식 · 김영호 · 문대림

박정현 · 소병훈 · 황정아

조승래 의원(10인)

#### 제안이유

2024년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가 조류 충돌사고로 무안공항에 불시착하여 179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직후, 항공 안전과 조류 충돌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항공 안전에 대한 사항을 자문하는 항공안전위원회와 조류 충돌 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조류 충돌 예방위원회는 각각 국토교통부 훈령과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구성·운영되고 있고, 위원장은 국민 안전이 매우 중요함에도 항공정책실장이 임명한 위원 중 호선하거나, 공항항행정책관이 맡도록 하고 있음.

또 지방항공청장은 항공 안전을 위해 항공기와 항공 관련 사업체, 공항시설 등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 항별 조류 충돌 예방위원회와 조류 충돌 예방대책 및 조류 충돌 위험 평가 등의 업무는 모두 한국공항공사 등 공항운영자에게 미룬 채, 이 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조차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공항운영자인 한국공항공사는 무안공항 조류 충돌 예방위원회에 15 년 전에 활동을 중단한 단체와 무안공항에서 항공기 운항을 중단한 항공운송사업자를 위원 명단에 포함시키고, 정작 이번 참사를 유발한 제주항공은 불참했음에도 회의를 진행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하였음.

이에 제주항공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항공안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장을 국토교통 부장관이 맡도록 위원회를 격상시킴(안 제6조의2).
-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조류 충돌 예방 및 위험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 도록 하고, 이에 대한 심의·의결과 자문 등을 담당하는 조류 충돌 예방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차관이 맡도록 함(안 제6조의3).
- 다. 지방항공청장이 공항별 조류 충돌 예방 및 위험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항운영자는 매년 조류 충돌 위험평가 결과와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분기마다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지방항공청장은 공항운영자에게 개선명령이나 시정 등의 조치를 할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4).

#### 법률 제 호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항공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 공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항공안 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 다.

- 1.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 2. 제6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 3. 항공기등에 발생한 고장, 결함, 기능장애 및 정비,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항공기기술기준 등에 관한사항
- 4. 제58조제1항에 따른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마련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5. 「공항시설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보안관리 및 기능유지 등에 관한 사항
- 6. 「공항시설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7. 「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장애물 및 제56조제5항에 따른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오물처리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환경 및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항공기사고·경량항공기사고·초경량비행장치사고 예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은 외부 관계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각부의 차관
- 2. 지방항공청장
- 3.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장 및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의 사장
- 4.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대표
- 5. 항공안전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실무 경험이 풍분한 사람
- 6. 항공안전 정책수립에 필요한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현장형 전문가로서 영향력이 인정되며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
-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③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며, 제2항제4호부터 제7

호까지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사전 검토 및 위원회에서 위임한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⑥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하여야 한 다.
-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 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2. 위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이해관 계인인 경우
- 3.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⑦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의결로 기피를 결정하여야 한다.

- 8 그 밖에 위원회 및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의3(조류 충돌 예방 및 위험관리 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류 충돌 예방 및 위험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조류 충돌 위험 평가
  - 2. 조류 충돌 발생 현황 및 원인 분석, 조치 사항
  - 3. 조류 충돌 저감 대책 및 야생동물 통제활동 실적
  - 4. 조류 등 야생동물 통제 인력 및 시설, 장비, 교육 훈련, 기술 개발 등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자 문을 얻기 위하여 제6조의2에 따른 항공안전위원회에 조류 충돌 예 방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조류 충돌 예방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 부차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 1. 국토교통부
  - 2. 지방항공청장
  - 3. 공항운영자

- 4.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대표
- 5. 공군
- 6. 환경부
- 7. 농림축산식품부
- 8.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 예방과 통제 및 위험관리 관련 대학·연 구소·국제기구에서 10년 이상 교수·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9.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 예방과 통제 및 위험관리 분야에 10년 이 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 10.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 예방과 통제 및 위험관리 관련 시설과 장비, 기술 개발 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 11.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⑤ 그 밖에 조류 충돌 예방 및 위험관리 계획 수립 및 조류 충돌 예방 실무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의4(공항별 조류 충돌 예방 및 위험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항공청장은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공항별 조류 충돌 예방 및 위험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매 반기마다 시행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민·군 공용공항으로서 군에서 조류 충돌 예방 대책을 시행하는 공항은 제외한다.

- ② 공항운영자는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적정한 규모의 조류 충돌 예방 전담인력의 배치, 시설과 장비의 확충, 기술 개발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공항별 조류 충돌 예방기구를 설치하여 조류 충돌 예방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
- ③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토대로 해당 공항에 대한 조류 충돌 위험평가를 매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조류 충돌로항공기 엔진 및 기체 손상이 발생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경우에는 72시간 이내에 항공운송사업자로부터 조류 충돌 보고를받아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항공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전자적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조류 충돌 위험평가를 시행하여야한다.
- ④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 분기마다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항공청장은 이를 평가 및 검토한 후 국토교통부장관과 조류 충돌 예방 실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적정성 평가 및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에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⑥ 지방항공청장은 공항운영자가 제출한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조류 충돌 위험평가를 평가 및 검토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⑦ 공항운영자는 지방항공청장이 제6항에 따라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명할 때에는 그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이행한 결과를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기한 내에 지방항 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항공청장은 이를 검토한 후 국토교통부장관과 조류 충돌 예방 실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8 그 밖에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추진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및 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 관은 항공안전에 관한 다음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 위하여 항공안전위원회(이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	현 행	개 정 안
1.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의 립 및 변경 2. 제6조제5항에 따른 연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항공기등에 발생한 고장, 함, 기능장애 및 정비, 항공 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안 을 확보하기 위한 항공기기 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제58조제1항에 따른 국가 공안전프로그램 및 같은 제2항에 따른 항공안전관리 스템 마련 및 운용에 관한 항 5. 「공항시설법」 제31조제1		제6조의2(항공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 관은 항공안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위하여 항공안전위원회(이하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6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항공기등에 발생한 고장, 결함, 기능장에 및 정비,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항공기기술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제58조제1항에 따른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및 같은 조제2항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마련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장시설의 보안관리 및 기능유지 등에 관한 사항
- 6. 「공항시설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설치및 운영에 관한 사항
- 7. 「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 에 따른 장애물 및 제56조제5 항에 따른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오물처리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환경 및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항공안전에 관한 사 항으로서 항공기사고·경량항 공기사고·초경량비행장치사 고 예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은 외부 관계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각

   부의 차관

- 2. 지방항공청장
- 3.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 장 및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의 사장
- 4.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국제 항공운송사업자의 대표
- 5. 항공안전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실무 경험이 풍분한 사람
- 6. 항공안전 정책수립에 필요한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현장형 전문가로서 영향력이 인정되며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
-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③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 에는 공무원으로 보며, 제2항제 4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위 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사전 검토및 위원회에서 위임한 업무 등

- 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 회를 둘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관련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의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⑥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당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하여야 한다.
-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경우
- 2. 위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이해관계인인 경우
- 3.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에 직 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

<신 설>

#### 정되는 경우

- ①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의결로 기피를 결정하여야 한다.
- 8 그 밖에 위원회 및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의3(조류 충돌 예방 및 위험관리 계획의 수립 등) ① 국 토교통부장관은 조류 충돌 예 방 및 위험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 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조류 충돌 위험 평가
  - 2. 조류 충돌 발생 현황 및 원인 분석, 조치 사항
  - 3. 조류 충돌 저감 대책 및 야 생동물 통제활동 실적

- 4. 조류 등 야생동물 통제 인력및 시설, 장비, 교육 훈련, 기술 개발 등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 고, 자문을 얻기 위하여 제6조 의2에 따른 항공안전위원회에 조류 충돌 예방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조류 충돌 예 방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 토교통부차관 중 국토교통부장 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 1. 국토교통부
- 2. 지방항공청장
- <u>3. 공항운영자</u>
- 4.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국제 항공운송사업자의 대표
- 5. 공군
- <u>6. 환경부</u>
- 7. 농림축산식품부
- 8.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 예방

과 통제 및 위험관리 관련 대학·연구소·국제기구에서 10년 이상 교수·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9.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 예방과 통제 및 위험관리 분야에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종사하였던 사람
- 10.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 예 방과 통제 및 위험관리 관련 시설과 장비, 기술 개발 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 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 11.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⑤ 그 밖에 조류 충돌 예방 및 위험관리 계획 수립 및 조류 충돌 예방 실무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4(공항별 조류 충돌 예방 및 위험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항공청장은 제6조 의3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공항별

<u><신</u> 설>

조류 충돌 예방 및 위험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매 반기마다 시행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 만, 민·군 공용공항으로서 군 에서 조류 충돌 예방 대책을 시행하는 공항은 제외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조류 충돌 예 방을 위하여 적정한 규모의 조 류 충돌 예방 전담인력의 배치, 시설과 장비의 확충, 기술 개발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하 며, 공항별 조류 충돌 예방기구 를 설치하여 조류 충돌 예방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 ③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토대로 해당 공항 에 대한 조류 충돌 위험평가를 매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조류 충돌로 항공기 엔진 및 기체 손상이 발생하는 등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72시간 이내에 항공운송사업자 로부터 조류 충돌 보고를 받아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항공청

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조류 충돌 위험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 분기마다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항공청장은 이를 평가 및 검토한 후 국토교통부장관과 조류 충돌 예방실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적정성 평가 및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에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있다.

⑥ 지방항공청장은 공항운영자 가 제출한 시행계획 추진실적 과 조류 충돌 위험평가를 평가 및 검토한 후,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⑦ 공항운영자는 지방항공청장

 이 제6항에 따라 개선명령 또

는 시정 등의 조치를 명할 때에는 그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이행한 결과를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기한 내에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항공청장이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항공청장이를 검토한 후 국토교통부장관과 조류 충돌 예방실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행계획 수립 및시행,추진실적 평가 등에 관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